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01. 06. 30
1차 개정	2001. 08. 25
2차 개정	2005. 01. 07
3차 개정	2008. 07. 04
4차 개정	2009. 08. 07
5차 개정	2013. 09. 16
6차 개정	2019. 12. 26
7차 개정	2021. 02. 25
8차 개정	2022. 12. 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과 인간존중·인명중시 경영으로 행복한 한국남부발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 및 남부발전에 출입하는 방문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내 임·직원이 조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019. 12. 26 개정)

②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 및 남부발전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에게는 별도 계약이나 확인서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

③ 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련된 개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2021. 02. 25 개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

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0 개정)

2. "안전사고"란 제1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 제외)와 회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 또는 공사의 각종 설비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부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00 개정)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 및 협력사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장"이란 본사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8.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2.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4.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사용자가 아닌 직원을 말한다.
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말한다. (2022.12.00 개정)
18.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본사에 설치·운영하는 노사간 협의체를 말한다. (2021. 02. 25 개정)
19. "안전경영위원회"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회사 및 협력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022.12.00 개정)
2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란 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와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022.12.00 개정)
21. "안전근로협의체란"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회사·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022.12.00 개정)
22. (2022.12.00 삭제)
2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022.12.00 개정)

제 4 조 (준수의무) ① 본사 처(실)장과 사업소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

- ② 모든 근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규와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자기 스스로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9. 12. 26 개정)
- ③ 제1항에 있어서 본사 처(실)장과 사업소장은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근로자에 있어서도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2019. 12. 26 개정)

제 5 조 (협조의 요청 등)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본사 각 처(실)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② 제1항의 본사 각 처(실)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인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6 조 (보고, 출석의 의무)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본사 및 사업소의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7 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 8 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 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시에는 이사회 최종 보고 전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근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 ③ 사업소는 제1항에 따라 각 조직에 적합한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의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④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2022.12.00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6.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 ⑥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⑦ 제5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1. 02. 25 신설)
1. 전년도 기본현황
 - 1-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1-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 1-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 1-4. 안전 예산 현황
- 1-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 1-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
 - 2-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 2-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2-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2-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2-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 3. 당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제 9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전사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담당 본부장을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을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021. 02. 25 개정)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사항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시행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 10 조 (안전보건 조직 운영) ① 회사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라인 및 스태프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2022.12.00 개정)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태프조직으로 안전

보건담당부서를 둔다.

- ③ **회사는** 라인조직의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센터 조직 또는 설비부서에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3항의 조직·직책에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 제 11 조 (안전보건 전담인력 보직)**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종사자의 보직은 사전에 안전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통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021. 02. 25 개정)
- ② 사업소장이 안전보건담당부서 종사자를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간부의 경우 안전담당 본부장의 승인, 직원의 경우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21. 02. 25 개정)
 - ③ 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자격으로 채용된 인력은 안전보건분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021. 02. 25 신설)

- 제 12 조 (관리감독자)** ① 회사는 처·실장, 부장, 차장 등 사업소 생산 라인부서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2019. 12. 26 신설)
-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2022.12.00 개정)
 8.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2022.12.00 개정)
 9.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2022.12.00 개정)
 10.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시행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 시행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2. 회사 직원이 직접 작업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하여 위탁한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이행하는지 점검·관리 (2022.12.00 신설)

제 13 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소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②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022.12.00 개정)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2022.12.00 신설)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4 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소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022.12.00 신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개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개정)
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한함) (2022.12.00 신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2022.12.00 개정)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022.12.00 신설)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2.12.00 신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2022.12.00 신설)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22.12.00 개정)

제 15 조 (산업보건직)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직을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

② 산업보건직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16 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사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②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2022.12.00 신설)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제 17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019. 12. 26 개정)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022.12.00 신설)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이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2022.12.00 신설)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활동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재 예방활동 참여를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제 1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①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소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자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근로자
-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소장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사업장 선임된 자로 한정) 각 1명
 3. 사업소장이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9 조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회사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본사에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기로 개최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차기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분야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2021. 02. 25 개정)

② 심의·의결된 사항 등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③ KOSPO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1. 02. 25 개정)

제 20 조 (법정관리요원의 신고) ① 회사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법정관리요원'이라 한다.)를 시행령에서 정한 수 이상으로 선임해야한다. (2022.12.0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법정관리요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선임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제 21 조 (안전·보건관리의 전담) 회사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22 조 (경영검토) <삭제> (2022.12.00 삭제)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23 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본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와 사업소의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당해연도 교육실적을 분석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보건교육은 법정교육과 자체교육으로 구분하며, 법정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2022.12.00 개정)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4 조 (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삭제> (2022.12.00 삭제)

제 25 조 (신규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삭제> (2022.12.00 삭제)

제 26 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입직원이나 수행업무가 변경되는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삭제> (2022.12.00 삭제)

제 27 조 (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키거나 관리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1. 일용근로자 : 작업형태별 2시간 이상

(단,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작업자는 8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작업형태별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8 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29 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해당업무 투입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삭제> (2022.12.00 삭제)

제 30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 12. 26 신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2022.12.00 개정)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32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① 회사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② 도급주관부서는 신규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시설개요,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에 준해서 2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33 조 (외부방문객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소는 사업장에 외부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경우 방문객에게 사업장의 시설개요,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정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최근 1년내 사업장을 재방문한 고객에게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4 조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35 조 (교육성과 측정)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종료 시 설문·시험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4 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 36 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37 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 38 조 (근로자의 안전권리) 모든 근로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019. 12. 26 신설)

1.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4.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 ② 모든 작업은 2인 1조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 ③ **회사는** 폭염과 한파 등에 의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보호가 필요한 경우

야외작업 제한, 근무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제 39 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평가는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2019. 12. 26 신설)

- ②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제거, 대체, 변경,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⑤ 도급 및 발주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험성평가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제 40 조 (안전분야 사전검토제) ① 공사·용역·구매를 발주하는 부서는 해당사업 추진 시 안전담당부서와 안전분야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분야 사전검토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41 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42 조 (안전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회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제1항부터 3항까지 시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

제 43 조 (보건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회사는** 미세먼지 대응,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작업안전보건수칙** 등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

제 44 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2021. 02. 25 개정)

제 45 조 (위험신고 제도 운영) ①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위험한 시설, 장비 및 **아차사고와 불안정한 행동을 한 작업자** 등에 대하여 위험신고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② 위험신고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담당부서**는 즉시 원인을 파악

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회사는 위험을 신고한 자와 적극적으로 개선조치한 자에 대해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④ 위험신고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46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걱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

제 47 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① 회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설비,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등을 설치, 이전, 변경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48 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

- ② 사업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49 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① 회사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50 조 (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명한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각 사업장은 필요시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③ <삭제> (2022.12.00 삭제)

제 51 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관계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작업 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산업재해 발생 시
 2.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해당 작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52 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모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1. 고소작업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또는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이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적절한 조치없이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또는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전기 충전부에 대한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Safety Call을 통해 안전 담당부서 또는 사업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Safety Call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53 조 (경영진 안전보건 현장점검) <삭제> (2022.12.00 개정)

제 54 조 (안전보건 순회점검) ① 사업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 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상태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전지적서(별표2)를 발부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제1항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안전담당부서는 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55 조 (작업 전 안전보건 검토)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작업인원의 적정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책임자 선임의 적정여부
5.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6. 현장 상태 및 작업여건 확인,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수립
7. 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2.12.00 개정)

③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검토와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56 조 (작업안전보건수칙)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작업안전보건수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② 근로자는 작업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③ 작업안전보건수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시행한다. (2022.12.00 개정)

제 57 조 (표준 작업안전분석서 작성·운영)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안전분석서(Job Safety Analysis)를 작성하고 부서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남부발전의 안전담당부서는 표준 작업안전분석서를 안전보건통합플랫폼에 등록·관리하여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58 조 (안전작업 허가제도 운영) ① 회사와 관계수급인은 사업소 관할 구역 내(사업소가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시행 및 확인 등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제1항의 안전작업 허가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59 조 (작업장 안전회의) ① 작업책임자(작업반장 또는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시행 장소에서 2회/1일 이상 작업장 안전회의를 통하여 당해 작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

1. 작업범위 및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정비
 3.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등 위험성평가서 공유
 4. 안전장구의 착용확인 및 사용방법 교육
 5. 작업구역의 안전표지 설치
 6.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7. 작업 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 ② 발주부서 감독자는 작업장 안전회의시(TBM) 입회하여 상기 안전점검 사항을 종합 Check 한다. 다만, OH 등 동시 다발작업에 의해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중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작업책임자는 TBM 안전일지에 작업시작 및 종료시 작업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보존하며, 안전회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

제 60 조 (안전수칙 위반) 회사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1. 작업장에서 작업중지 및 안전교육장 이동 조치
2.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숙지 여부 확인 등 지적자 확인을 거쳐 재투입
3. 위반사항이 심하고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소장에게 **보고 후** 퇴출 조치
4.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결과는 대장으로 기록관리

제 61 조 (안전장구 및 보호구) ①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장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안전장구 및 보호구**는 관련 시행령(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법 제84조 2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62 조 (유해·위험기구 양도 등의 제한)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법 제80조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개정)

-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른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63 조 (안전검사)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 제78조

에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검사 대상, 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64 조 (차량 안전운행) ① 회사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사업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소내 안전속도 준수, 지정된 주행로 및 주차장 이용 등 교통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회사차량 관리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65 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① 회사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022.12.00 신설)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각 사업장은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 ③ <삭제> (2022.12.00 개정)

제 66 조 (비상조치계획) ① 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화재·폭발·누출, 태풍·홍수·지진 등 중대산업사고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제1항의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원·하청 등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경보체계 및 설비 운영
 9.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10.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③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67 조 (피난 및 대응훈련) ①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은 6개월에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68 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 69 조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① 발전소 주변 주민, 견학자 등 다수의 국민이 우리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각 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안내서, 팸플릿, 안전표지, 안내방송,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가 숙지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0 조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① 회사는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대상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② 회사는 대국민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 71 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시 작업의 중지
3. 산안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다.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마.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바. 관계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 장소의 제공 또는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사. 같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2022.12.00 신설)
 - 자. 사목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2022.12.00 신설)
 - 차.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2022.12.00 개정)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7. 관계수급인의 산안법 위반 시 시정조치

제 72 조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회사는**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세칙 및 절차서를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도급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2022.12.00 개정)

제 73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수준 평가) ① **도급주관부서는**

사업장(회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착공 전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제출받아 안전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안전담당부서는 요청한 서류를 근거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작업수행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 개선을 요청하고 적합할 경우에만 착공을 승인할 수 있다. 착공 이후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③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 ④ 도급주관부서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정산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74 조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별표1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 가. 건설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2022.12.00 신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 위생시설 등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가. 휴게시설 나. 세면·목욕시설
 - 다. 세탁시설 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 7. 같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2022.12.00 신설)

8. 사목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2022.12.00 신설)
9. 회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제 75 조 (안전경영위원회)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회사 및 협력회사 대표, 회사 및 협력회사 근로자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의 안전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2021. 02. 25 개정)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전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반기 1회 시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KOSPO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76 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①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 및 수급인 전원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장 또는 현장소장이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회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77 조 (안전근로협의체)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장별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및 하청 노사가 참여

하며, 하청 노사는 작업장에 상주하는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별로 시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및 차별 방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보고된 안전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 게시판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⑤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 78 조 (건설공사 안전보건특기시방서 운영) ① <삭제> (2022.12.00 삭제)

- 제 78 조의 2 (건설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회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 건설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세칙 및 절차서를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 ② 발주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2022.12.00 신설)

제 79 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② 제1항의 건설공사란 본 규정 제3조 제13호를 말하며,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③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④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80 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22.12.00 개정)

제 80 조의 2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된다. (2022.12.00 신설)

②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022.12.00 신설)

제 81 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 82 조 (설계 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83 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인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022.12.00 개정)
- ③ 공사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이 초과될 경우 안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정산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83 조의 2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관과 계약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신설)

제 84 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2022.12.00 개정)

- ②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85 조 (건설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 회사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별표8의 점검표 내용을 바탕으로 분기별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시설 피해 및 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7 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 제 86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소 해당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2022.12.00 개정)
- ② 해당 부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제 87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 88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를 포함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 운송, 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등 16개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제공하여야 하며,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 89 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관리감독자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유해인자는 노출정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90 조 (석면의 제조·사용작업 및 관리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가동하여야 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 91 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 92 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인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한다.

- ④ 제1항 1호에 대한 검진비용은 법적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호 대상 중 법적 대상이 아닌 경우 및 2호~5호에 대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021. 02. 25 개정)
- ⑤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1. 02. 25 개정)
- ⑥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자 등의 조언을 활용할 수 있다.
-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⑩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3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4 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 95 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마약복용·향정신성약품 사용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혈관·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될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토록 하는 업무,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 ④ 모든 임직원들은 전염병 의심 진단시(확진시 포함)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 및 근로를 중지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제 96 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반기 1회이상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2. 25 개정)

제 97 조 (근로시간 연장제한)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또는 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 또는 도급업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갯(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 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 98 조 (자격 또는 면허 미보유자 취업제한)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9 조 (건강관리실 등 설치·운영) ① 회사는 근로자들의 건강 사후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또는 의무실)을 설치·운영하고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사내 도급 사업자 및 방문 출입자 포함)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관리실(또는 의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 100 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회사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상 요건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9 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 101 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재해자 구호 및 이송은 119를 이용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 및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 102 조 (안전사고의 분류)** ① 안전사고의 분류는 인적사고와 물적사고, 아차사고로 구분한다.
- ② 안전사고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021. 02. 25 개정)
1.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반재해 :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 ③ 안전사고는 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인적 요인
 2. 설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관리적 요인

- 제 103 조 (안전사고 보고)** ① 아차사고를 제외한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는 사고인지 후 즉시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관리감독자가 유선보고한다. 서식을

이용한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12.00 개정)

1. 즉보 : 사고인지 후 3시간 이내
2. 중간보고 : 즉보 후 24시간 이내
3. 상세보고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104 조 (안전사고 즉보) ① 안전사고 즉보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과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사고는 제1항에 준하여 당직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사고 즉보 서식은 별표4 양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5 조 (안전사고 중간보고) ① 안전사고 중간보고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 전자우편, 메신저 또는 FAX 등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서식은 즉보양식을 준용하고 안전사고 후 진행경과, 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을 추가하여 보고한다.

제 106 조 (안전사고 상보) ① 안전사고 상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보 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새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으로 제출한다. (2022.12.00 개정)

1.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2부
(적용대상 및 서식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른다)
2. 산업재해 상보 1부 【별표5】
3.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1부 【별표6】
4.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별표7】
5. 현장도면 각 2매
6. 사고현장 사진 각 2매
7. 시체검안서 또는 진단서 1부
8. 경찰조서 사본 1부
9. 합의서 사본 1부
10. 안전교육 실적 사본 1부
11.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부 (기간내 미작성시 사고발생 30일 이내 공문 제출)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각 1부

② 상보는 보고된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별표5 서식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107 조 (아차사고 공유 및 활용) ① 아차사고는 인적, 물적피해는 없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는 해당 사고를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에게 공유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안전담당부서는 아차사고 사례에 대해 반드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사업소는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③ 회사는 아차사고 사례를 교육자료, 위험발굴·개선 등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신고자 및 조치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108 조 (안전사고의 조사) ① 회사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자료는 재발방지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022.12.00 개정)

② 안전사고의 조사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고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관계부서는 조사 시 입회, 검사, 측정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안전사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이해관계자(재해자, 작업동료, 근로자대표 등)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③ 안전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주관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 자체조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조사 시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는 본사의 조사에 앞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보존,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직원 사망사고
2.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고
3. 당해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사장의 지시가 있는 때
5. 기타 필요한 경우

제 109 조 (사고 총괄분석 및 관리)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총괄·분석한 후, 안전사고 통계집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안전사고 방지업무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 110 조 (실적보고) 사업소장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111 조 (대관보고) **회사는**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제 112 조 (포상) ① 회사는 안전·보건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업소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기준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12.00 삭제)

1. 무재해 실천 우수 사업소
2. 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임직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포상을 추천한 자 (2022.12.00 개정)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별도 기준에서 정한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1. 위험신고 근로자 및 위험개선조치 시행자
2. 아차사고 사례 등록자 및 위험개선조치 시행자
3.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자 (단, 안전담당부서는 제외)
4. 기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자

제 113 조 (징계 처분)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상에 관계자들에 대한 상벌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명기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상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안전사고 보고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조작한 경우

② 본사 및 사업소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회부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③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의 간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중대 안전보건수칙 위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설비피해가 발생하여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022.12.00 개정)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시행했을 경우 (작업허가서 발행이 곤란한 긴급 상황인 경우 설비부서장 등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제6조 긴급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경우 제외) (2022.12.00 개정)
2. 운전부서 허가없이 임의 조작 또는 접지작업을 하였을 경우
3. 정전 또는 휴전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등에서 보고절차나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4. 작업현장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전수칙을 미준수하였을 경우

제 114 조 (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한은 문서관리규정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15 조 (무재해 운동 추진) ①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사업소 **안전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2022.12.00 개정)

제 116 조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작업 수행 중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되어야 할 안전관리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 운영 세칙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2022.12.00 개정)

제 117 조 (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로 따로 정한다. (2022.12.00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1. 6.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1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1.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0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12.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 순회점검 기준

안전보건 순회점검 기준

구 분	사업소 점검 주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 1회 이상 (건설업 등 ¹⁾ 인 경우 2일에 1회 이상)	분기에 1회 이상 (건설업 등 ²⁾ 인 경우 2개월에 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현장점검 주기는 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1)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는 경우,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현장 위험요인[시설, 설비 등] 파악 중심)을 시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혼재작업 파악 중심)도 함께할 수 있다.

※ 상기 표에 관계없이 중요공사, 휴전공사, 야간공사시(심야작업 포함)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지적서

안전지적서

발행번호 :

발행일시		작업명	
발생위치		업체명	
대상자		업체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인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인
위험유형	<input type="checkbox"/> 떨어짐(추락) <input type="checkbox"/> 넘어짐(전도) <input type="checkbox"/> 깔림·뒤집힘(전도) <input type="checkbox"/> 질식 <input type="checkbox"/> 부딪힘(충돌) <input type="checkbox"/> 무너짐(붕괴) <input type="checkbox"/>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input type="checkbox"/> 감전 <input type="checkbox"/> 끼임(협착) <input type="checkbox"/> 화재·폭발 <input type="checkbox"/> 베임·찢림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반구분	<input type="checkbox"/> 중대 안전수칙 위반 <input type="checkbox"/> 일반 안전수칙 위반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반내용			

대상자는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기 안전수칙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소속		성명	(서명)
-----	----	--	----	------

발행자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 (발행자 소속 부서장)	소속		성명	(서명)

※ 시정조치 절차

- 발행된 안전지적서는 안전담당부서에 제출 → 안전담당부서에서 조치부서에 통보
 → 조치부서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의무)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 (설 치) 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주) 각 사업소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사업소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사업소위원회의 운영기준은 사업소위원회에서 제정하거나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구 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노사 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노사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서 다음과 같다.
 - 사용자대표 : 해당 사업소장 또는 사업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근로자대표 : 발전노조 및 남부발전노조에서 해당 사업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소속 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4. 사용자위원은 사업소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해당사업장에 선임된 자로 한정) 각 1명, 사업소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5.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

전감독관, 9인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사업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 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5조 (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회사는 노조측 위원의 위촉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활동, 사외 안전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③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등) ① 사업소장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사업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정한 안전·보

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원회 운영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성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직하위직에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 개최 시 회사측 및 노조측 위원은 상호 000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회의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또는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본사에서 주관)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당 사업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회사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토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다음 각 호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 조언
2. 직업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건의
7. 기타 회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 및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회의결과 주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된 사항을 사내보, 게시, 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정된 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립 및 의결)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참고인 출석) ①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위원회 출석을 요청받은 직원은 출석하여 성실히 의견 등을 진술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사업주의 의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과 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회사는 노조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제16조 (부결시 조치) 사용자대표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회사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 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준용) ① 이 협약의 미비점은 통상관례로서 관련법에 준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② 각 사업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제정에 따른 본 규정과 충돌 시는 본 규정을 우선한다.

③ 각 사업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시까지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발전 **화력 ***** **산입재해 즉보**

-'**.*.**(*) ***** ***(010-****-****)-

◇ *.*(*) **.**분경 **발전본부 *****에서 *****작업 중 *****가 발생한바 관련 동향을 보고드립니다

□ **사고개요**

- 일 시 : '**.**.**.(*) **.**분경
- 장 소 : **발전본부
- 재 해 자 : ***(**세, ***** 소속 *****(**노총))
- 사고경위 : *****

사고발생 경위	
사진1	사진2

□ **조치경과**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향후계획**

- 구체적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발전 **화력 ***** **산업재해 중간보고**

-'**.**.**(**) ***** ***(010-****-****)-

◇ ****(**) **:**분경 **발전본부 *****에서 *****작업 중 *****가 발생한바 관련 동향을 보고드립니다**

□ 사고개요

- 일 시 : '**.**.**.(*) **:**분경
- 장 소 : **발전본부
- 재 해 자 : ***(**세, ***** 소속 *****(**노총))
- 사고경위 : *****
- 사고원인 : *****

사고발생 경위	
사진1	사진2

□ 조치경과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재발방지대책

□ 향후계획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고조사 대책 회의 계획

(별표 5) 산업재해 상보 양식

산업재해 상보	
사고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짜 :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종류	1. 감전 2. 추락 3. 낙하 4. 기타
계약명	
공사명	
구분	시공사 : 하수급인 : 일반인 :
피해상황	1.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2. 재산피해 천원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연령
	주소 : 소속 :
재해정도	
재해자 조치사항	
붙임서류	(예시) 1.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3. 안전관리자 의견서 1부 4. 현장도면 2부 5. 현장사진 1부 6. 진단서 1부 등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담당부서장 (인)

산업재해 조사보고서

【공사(작업)명 : _____】

00년 00월 00일

간사 :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인)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000 사업소

작성자 : 000

1. 사고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간 : 날씨 :

2. 사고장소 :

3.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재해구분 및 정도 등)

○ 물적피해 :

4.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성별		직군	
사번		입사일	

5. 재해발생 형태 및 부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맞음	끼임/ 물림	갈림/ 절단	감전	고저원 물체노출	유해 물질 노출	화재 폭팔	질식	무리한 동작	차량 교통 사고	기타
재해부위							초진결과						

6. 발생개요

일시 (언제)	<i>(계약형태, 고용형태 반영)</i>
장소 (어디서)	
행위자 (누가)	
행위내용 (무엇을)	
경위 (어떻게)	
이유 (왜)	

위험(사고)형태	
☞ 작성방법 : 별표1 유해위험요인 및 원인 분류표 참고하여 기술	

7. 조치 및 진행상황

☞ 작성방법 : 시간별로 작성(분단위)

8. 목격자, 면담자 정보

목격자 성명		부 서		연락처	
부서장 성명		부 서		연락처	

9. 기타 조사 항목

- 고위험작업 여부, 작업자의 작업시간, 안전작업허가서 등 관련서류 작성여부, 재해자 보호구 착용여부, 안전교육 이수실적

10. 사고현장 안전조치 사항(즉시조치, 임시조치)

사고현장 안전조치 사항(즉시 조치, 임시 조치)	담당자	일 자	조치결과

11. 사고발생원인분석

직접원인

○
○
○

☞ 작성방법 : 별표1 유해위험요인 분류표 참고하여 기술 (요인별 원인이 없을 경우 공란) 가장 기여도가 높은 원인을 직접원인으로 표시

12. 근본원인분석

○ 직접원인에 대하여 다음 “5 Why” 질문 작성

Why? 1
(왜?)
Why? 1
(왜?)
Why? 1
(왜?)
Why? 1
(왜?)
Why? 1
(왜?)

근본원인	
------	--

☞ 작성방법 : 직접원인별 5Why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근본원인 도출

13. 개선대책 담당부서

부서	직장(과)명	성명	직위	연락처

14. 재발방지대책

재발방지대책	담당부서	완료(예정)일	조치현황
근로자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까?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 작성방법 : 재발방지대책은 본질적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사용 순으로 작성			

15. 사고사례전파(예시)

16. 재해자처리현황

병원명	진단명	처리구분	처리방안

17. 종합의견 (필요시 재해자 및 관련자의 상별 인사위원회 회부여부 명기)

18. 조사자

- 조사 및 작성자 :
 - 조사 입 회 자 :
 - 안전담당부서장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1. 재해자 진술서
2. 목격자 진술서
3. 사고장소 도면 및 사진 1부.
4. 사고 상황도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2]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소 속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남/여)직종
<h3 style="margin: 0;"><u>진 술 내 용</u></h3> <p style="margin: 10px 0 0 0;"> 년 월 일 시 분 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한 목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p>				
1. 목격경위(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어떻게 다치는 것을 보았으며, 즉시 어떻게 조치하였다는 것을 서술한다)				
2. 안전장치(있음, 없음, 사용, 있는데 미사용, 고장) :				
3. 안전보호구(있음, 없음, 사용, 미사용, 상태불량) :				
4. 재해발생의 직접원인 및 이유는 :				
5. 재해의 간접원인 및 이유는 :				
6. 재해자와의 관계 : 친구, 동료, 기타 :				
<p style="margin: 0;">위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p> <p style="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0;">진술인 (인)</p>				

[붙임 3] 사고장소 도면 및 사진

사고장소 도면 및 사진

【사고명 : 】

일시 : 년 월 일	장소 :
※ 재해자가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다.	

[붙임 4] 재해자 진술서

재해(사고) 상황도

【사고명 : 】

일시 : 년 월 일	장소 :
※ 재해자가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다.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서

1. 귀책 “유·무”를 결정하는 사유

유, 무

◎

2. 자체 조치예정 사항

가.

나.

다.

3. 건의사항

가.

200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별표 8)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점검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점검표

공사명 :

점검자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필요
		O,X	내용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	I. 주변 시설			
	• 시설물 침하 여부			
	• 시설물 변위 여부			
	• 시설물 균열 여부			
	II. 주변 교통			
	• 차량 통행의 안정성 여부			
	• 공사 안내/경고표지 설치 여부			
	• 도로 노면 손상 여부			
	III. 주변 보행자 통로			
	•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여부			
	• 외부차량 다량 현장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여부			
	• 보행로 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여부			